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과태료 징수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,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,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,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인

2016년 12월 2일

국무총리 황교안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장관
(법무부 소관) 홍윤식

●법률 제14281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한다.

제2조제1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수형자·미결수용자·사형확정자, 그 밖에”를 “수형자·미결수용자·사형확정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확정된”을 “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”으로, “받은”을 “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받은”을 “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확정된”을 “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)”를 “(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전염”을 “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”으로,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을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제88조 중 “제84조”를 “제82조, 제84조”로 한다.

제112조제3항 본문 중 “제13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집필·서신수수·접견 또는 실외운동”을 “집필·서신수수 또는 접견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처분 중 실외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用に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으므로,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,

‘수용자’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용어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(제2조 및 제35조).

나.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,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수사, 재판 등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(제88조).

다.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(제112조).

<법제처 제공>